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의 회 사 무 국
위 원 회 제 안

#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6. 1. 20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#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6. 1. 20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의원의 중복 가입을 제한하여 의원연구단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.

또한 의원연구단체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.

아울러 의원연구단체 수를 3개로 조정하고, 연구활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10월 31일까지로 하되,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해에는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,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질과 실효성을 높이려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연구단체의 구성(안 제3조)
- 나.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4조)
- 다.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(안 제7조)
- 라. 연구활동 기간 및 운영계획 수립(안 제9조)

## 3. 조례안: 붙임

##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나 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의원은 중복 가입 할 수 없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또한,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민간위원으로 구성된 「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」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⑦ 심의위원은 자신이 연구단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,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⑧ 연구단체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,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.

⑨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4개”를 “3개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되,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해에는 11월 30일까지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서에 따라 연구활동 기간을 1년 이상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③ 심의회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심의회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을 추천하며, 의장이 4명 이내의 민간 위원을 위촉한다.

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심의회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.

<신 설>

③ 심의회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

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제7조(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의원연구 단체의 수는 연간 <u>4개</u> 이내로 한다.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 <p>제9조(연구활동 기간 및 운영계획 수립)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된 날로부터</p>	<p>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p> <p>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⑦ 심의위원회는 자신이 연구단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,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</p> <p>⑧ 연구단체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,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⑨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</p> <p>제7조(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3개</u> ----- ---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연구활동 기간 및 운영계획 수립) ① ----- -----</p>
---	---

<p>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로 <u>한</u> 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② (생 략)</p>	<p>----- <u>하</u> 되,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해에 는 11월 30일까지로 한다. 단, <u>승인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</u> <u>동 계획서에 따라 연구활동 기</u> <u>간을 1년 이상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